

#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4013-1901-0541-2]

## 1. 건물정보

건물명	서울시청사
건물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)
안전관리자	명 * 봉 (교육유효만료일자 2019.08.16 일까지)

## 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116,490원)

국민은행	52659014067534	기업은행	08207075597396
농협은행	79013419598183	신한은행	56211159000251
우리은행	26766468918581	우체국	81081280716085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.  
 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)

## 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	정기검사		검사대수			1대		총수수료	116,490원	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	
1	2019.01.30	14(1-14)	0082-354	로프식	승객용	4	105,900	0	0	10,590	
<b>합계</b>							<b>105,900</b>	<b>0</b>	<b>0</b>	<b>10,590</b>	
<b>총합계</b>							<b>116,490</b>				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완성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
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9에 따라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 수수료(73,000원, VAT별도)는 별도 산정됩니다. 다만, 관리주체에서 분동을 준비하는 경우 분동수수료는 제외됩니다.

(상기 하중시험 중 정격하중이 5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경우 수검자(승강기 관리주체 등)가 분동을 직접 준비하여야 합니다.)

문의 : 고객지원센터 1566-1277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

